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 의 설 치 및
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영리업무의 금지(안 제2조)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3인의 경우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

나. 결격사유(안 제3조)

방미통위 및 방미심위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방송·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함

- | |
|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「방송법」 제2조제2호·제5호·제8호·제11호·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(사외이사, 비상임이사,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 및 직원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3.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 |
|---|

다.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(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)

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
라.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(안 제6조제1항, 별표1)

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의 정무직 근거 조항 신설 및 보궐위원 위촉 기준 등을 규정함

마.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(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)

심의대상 정보 및 시정요구 종류, 회의 운영방식,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, 사무처 정의 등을 규정함

바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(안 제12조)

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대상 사무 등을 규정함

사. 과태료 부과기준(안 제13조, 별표 2)

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을 별표 2로 신설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

제2조(영리업무의 금지)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제3조(결격사유)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·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방송법」 제2조제2호·제5호·제8호·제11호·제13호에 따른 방송 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(사외이사, 비상임이사,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 및 직원
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

3.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

제3장 위원회의 운영

제4조(전문위원회)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·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·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,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특별위원회)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④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·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
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

제6조(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심의위원회 위원(이하 “심의위원”이라 한다)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) ① 법 제22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및 같은 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.

② 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
2.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
3.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라 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의 관리·운영자(이하 “게시판 관리·운영자”라 한다)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.

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·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게시판 관리·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1.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·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
2. 시정요구의 문서번호
3. 이의신청의 사유
4.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
5.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8조(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)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심의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,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제9조(소위원회)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(이하 “소위원회”라 한다)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4항에 따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결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특별위원회)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, 특별위원회 위원장은

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사무처)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, 국, 팀,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.

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,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,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무

3. 법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
제1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

표 2와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폐지한다.

[별표 1]

심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6조제1항 관련)

총계	1
정무직 계	1
위원장(장관급)	1

[별표 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(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):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: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
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31조제1항	700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2) 2110 - 1324